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김 정 섭 연구 위원
김 미 복 부 연구 위원

연구 담당

김 정 섭 연구위원 연구 총괄, 집필(1장, 2장, 3장, 4장)
김 미 복 부연구위원 집필(2장)

머 리 말

농촌 지역사회는 인구 과소화·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문화가정, 귀농, 외국인 노동자 등의 증가로 인구사회학적 전환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처음 출현했을 때 그러했듯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협력이 절실한 곳에서부터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출현하는 협동조합들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난제들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농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농촌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이들도 많고,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이 규정하는 협동조합의 활동 범위는 아주 넓어서 사회, 경제의 제반 영역에서 그것에 걸맞은 제도 개선 작업이 병행되어야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협동조합들이 농촌에서 어떻게 설립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기존의 농업법인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법제 개선 논의를 펼치고 있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제도 정비 작업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요 약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은 도시 못지 않게 활발하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8개월이 지난 2013년 7월 시점에서 농촌에는 6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그 협동조합들의 평균 출자금 규모도 도시 지역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 농촌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사업 분야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농산물 생산·가공·판매를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의 농업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형식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농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제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가 많겠지만, 농업법인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러 법률에서 농업법인은 크게 세 종류의 유리함을 갖는다. 첫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여러 종류의 조세감면 조치의 대상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농업 및 농촌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세 측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우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다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 하나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연계된 수십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이어서 시행령과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을 광범위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rends of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Rural Korea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is a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small number.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corporati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Corporations or Agricultural Corporations.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Researchers: Jeong-Seop Kim, Mee-Bok Kim

E-mail address: jskkjs@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 목적 5
-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6

제2장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

- 1. 협동조합 설립의 전반적 동향 7
- 2. 농촌 지역 협동조합 설립 현황 10
- 3.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유형 15
- 4. 시사점 20

제3장 제도 개선 과제

- 1. 법제 정비 논의의 범위 24
-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정책 대상과 협동조합 26
- 3. 농업법인과 협동조합 29

제4장 요약 및 결론 43

- 부록 1.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을 포함하는 법률 조문 45
-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는 법률 조문 59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69
- 4.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75

- 참고 문헌 81

표 차례

제2장

| | | |
|---------|---------------------------------------|----|
| 표 2- 1. | 신규 협동조합 설립 신고(신청) 및 수리(인가) 현황..... | 7 |
| 표 2- 2. | 일반 협동조합 설립 신고 건수 지역별 현황..... | 8 |
| 표 2- 3.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 9 |
| 표 2- 4. |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업종별·지역별 분포..... | 12 |
| 표 2- 5. | 농촌 지역 협동조합 출자자 수 및 출자 규모의 지역별 현황..... | 13 |
| 표 2- 6. |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규모 분포..... | 13 |
| 표 2- 7. |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업종별 출자 규모와 설립 동의자 수..... | 14 |
| 표 2- 8. | 농업 생산 관련 협동조합..... | 17 |
| 표 2- 9. | 농촌관광 관련 협동조합..... | 18 |
| 표 2-10. | 농업 및 농촌관광 부문 외의 협동조합..... | 19 |
| 표 2-11. | 농촌 인구나 조합원 수 추정..... | 21 |

제3장

| | | |
|---------|---|----|
| 표 3- 1.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책 대상을 규정한 조항들 | 27 |
| 표 3- 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책 대상을 규정한 조항들 | 31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다양한 협동조합¹들이 전국에서 등장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8개월이 지난 2013년 7월 말까지 총 2,261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인가 신청이 있었다.² 이러한 추세는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에서 2018년까지 8,289~10,73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³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은 대

1 이 보고서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별하여 언급할 때에는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지칭한다. 부가적인 설명 없이 ‘협동조합’이라고 언급할 경우, 그것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등 전체를 아울러 통칭하는 것이다.

2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7월 31일까지의 협동조합 유형별 설립 신고 및 인가 신청 건수는 일반 협동조합 2,154건, 사회적 협동조합 98건,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9건이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를 참고.

도시에서 두드러지지만, 농촌 지역에서도 활발하다. 일반 협동조합들 가운데 군과 도농복합시에 사무소를 둔 ‘농촌 협동조합’은 602개(27.9%)다.

협동조합들이 이처럼 갑자기 많이 설립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그 기대의 내용은 다양하다. ‘구조적인 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또는 집단 및 계층 간 격차 확대의 문제, 지역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문제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경제적 문제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장종익, 2012)⁴는 주장,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복지 사업이 갖는 의의를 강조’(김형미, 2011: 40-42)하는 주장 등이 나온다.⁵ ‘유럽에서 19세기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배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집합적 대응 전략이었다면, 20세기 말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야기되어온 실업과 복지 후퇴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 전략이라고’(장원봉, 2008: 207-208), 협동조합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한

3 이 보고서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2,791~3,494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였다(이철선·권소일·남상호·김미숙·오영호·윤강재·김현식·이상립, 2012: 135).

4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형성 및 발전 초기에 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부문과 지역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혁신적 형태의 기업이었고, 독과점 시장 구조로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곳에서는 독과점을 제어하는 경쟁 척도(competitive yardstick)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었으며, 지역사회의 개발을 매개하고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역량과 연대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 창출 기업이었다고 평가된다(장종익, 2012). 즉,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 각종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효과적인 조직적 대응 방법의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조적 실업, 사회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김형미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같은 조합원 입장에서 서로 돕는 상호부조 활동의 연장선이므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서비스 이상의 소통, 정서적 교감, 배려와 신뢰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준다고 주장한다(김형미, 2011: 39). 게다가 같은 조합원이라는 당사자성이 복지 서비스의 공정한 지불과 대가에 대한 합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한국 생협의 공동육아 및 어린이 학교, 방과후 교실, 의료생협,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영국의 돌봄서비스 협동조합, 일본의 복지클럽생협 등을 든다(김형미, 2011: 40).

다.⁶ 또 다른 종류의 기대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당면한 정부의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분야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3a)거나, ‘협동조합이 소비자 권익 증진과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3b)는 기대이다. 우려도 있다.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무분별한 설립과 파산, 일부의 협동조합 명칭 악용 등으로 인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 상실’(설광언·김동석, 2012:158), ‘관계 협동조합 육성 정책’(박승욱, 2012),⁷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부터 출발하는 내실 없는 협동조합 난립’(김정섭·마상진·김미복, 2012: 52)⁸ 등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의 상황에 대한 기대나 우려 모두 일리 있는 의견들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구체적이고 경험

6 물론, 장원봉은 한국에서 기존의 협동조합 조직들이 시장경쟁의 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협동의 경제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채택할 수 있는 내부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붙인다(장원봉, 2008: 210).

7 관계 협동조합 육성 정책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부분(42쪽)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 정부 정책은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 정책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 협동조합 육성 정책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많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처럼 정부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지원법, 육성법이 아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숫자로 성과주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정부정책 속성상 결국에는 기초자치단체별 협동조합 정책 평가는 결성된 협동조합 수를 기준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8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대표자 등 주요 인사들의 53.8%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을 들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36.5%에 불과했다. 몇 가지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지원), 협동조합 설립 의향률은 더 높았다. 「협동조합기본법」 등 제도 변화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막연한 기대감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근거이다.

적인 분석의 지반 위에서 도출된 의견이 아니어서 농촌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급히 제기하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드러난다. 농촌 지역에서 지금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 하는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진입할 수 있게 된 경제적·사회적 활동 영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과는 별개로 정비해야 할 제도 또는 정책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법제들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는데 주로 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농업법인 사이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사회·경제의 제반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을 품은 채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그것에 상응하여 농업법인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농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요즘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간단하게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마을기업⁹들이 많다.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법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나서 협동조합법인 형식의 마을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농촌에서 마을기업의 상당수가 영농조합법인의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문제는 최근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과 예전에 설립된 동일한 목적의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 사이에 세금이나 정책 측면에서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가령,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의 농업인 조합원이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9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안전행정부, 2013: 1). 안전행정부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의 농업인 조합원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¹⁰ 폐교가 있는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을 설립하고 폐교 재산을 소득 증대시설로 사용하려 할 때 시·도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해주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¹¹ 심지어,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이 작물을 재배하려고 일반적인 영농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은 환급받을 수 없다.¹²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 협동조합법인들이 더 많이 설립되면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개연성은 높다. 시급한 것은, 동일한 경제활동 영역에서 동일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법인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공평하지 못한 방식으로 법규가 적용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동향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세부 연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을 살펴본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농촌 지역 행위자들의 동기, 목적,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둘째,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관련하여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참조.

1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 참조.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2호 참조.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이 보고서의 2장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의 정부 집계 자료를 토대로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을 정리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누가, 왜, 어떤 경제적·사회적 활동 분야에서,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새로이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의 지역 분포, 조합원 수, 출자금액, 사업 내용 등을 일별할 것이다.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들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거나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제출한 바 있다(예: 장종익, 2012; 오은주·김선기, 2012; 김두년, 2012; 설광언·김동석, 2012; 심태섭·김완석, 2012; 원종욱·김태완·김문길·윤문구·엄형식·윤시몬·임완섭·정은영, 2012; 이철선 등, 2012). 그렇게 제출된 전망이나 정책 과제들을 염두에 두고 농촌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만한 시점은 아니며 그럴 필요성이 큰 것도 아니다.

3장에서는 농촌에서 출현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여타 유형의 법인들과 비교하여 제도적으로 형평성 있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주요 법인 경영체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와 정책 지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기존 농업법인들과 내용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형평성 있는 제도적 처우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

제 2 장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

1. 협동조합 설립의 전반적 동향

2013년 7월 말까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신고가 수리된 협동조합의 수는 일반 협동조합 1,974개, 사회적 협동조합 58개,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7개를 포함하여 모두 2,039개였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수리된 협동조합 신고 건수가 전체의 40%를 넘는다. 그 외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지에서 협동조합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표 2-1. 신규 협동조합 설립 신고(신청) 및 수리(인가) 현황

| 구분 | 전월 신고(신청) 건수 누계 | 신고(신청) 건수 누계 | 수리(인가) 건수 누계 |
|-------------|--------------------|-----------------|-----------------|
| 일반 협동조합 | 1,631 | 2,154 | 1,974 |
|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 7 | 9 | 7 |
| 사회적 협동조합 | 89 | 98 | 58 |
| 합계 | 1,727 | 2,261 | 2,039 |

주 1) 2013년 7월 31일 기준.

2) 일반 협동조합 및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는 '신고' 및 '수리'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청' 및 '인가'로 구분하였다.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표 2-2. 일반 협동조합 설립 신고 건수 지역별 현황

| 소관 지방자치단체 | 전월 신고 건수 누계 | 신고 건수 누계 | 증가율 | 수리 건수 누계 | 구성비 |
|-----------|-------------------|-------------|-----|-------------|--------|
| 서울특별시 | 515 | 660 | 28% | 564 | 28.6% |
| 부산광역시 | 110 | 143 | 30% | 143 | 7.2% |
| 대구광역시 | 53 | 77 | 45% | 77 | 3.9% |
| 인천광역시 | 55 | 66 | 20% | 63 | 3.2% |
| 광주광역시 | 168 | 201 | 20% | 192 | 9.7% |
| 대전광역시 | 63 | 80 | 27% | 74 | 3.7% |
| 울산광역시 | 29 | 38 | 31% | 35 | 1.8% |
| 경기도 | 212 | 280 | 32% | 261 | 13.2% |
| 강원도 | 43 | 77 | 79% | 56 | 2.8% |
| 충청북도 | 48 | 59 | 23% | 59 | 3.0% |
| 충청남도 | 53 | 69 | 30% | 61 | 3.1% |
| 전라북도 | 99 | 137 | 38% | 134 | 6.8% |
| 전라남도 | 65 | 85 | 31% | 83 | 4.2% |
| 경상북도 | 48 | 84 | 75% | 79 | 4.0% |
| 경상남도 | 48 | 66 | 38% | 65 | 3.3% |
| 제주특별자치도 | 14 | 24 | 71% | 20 | 1.0% |
| 세종특별자치시 | 8 | 8 | 0% | 8 | 0.4% |
| 합계 | 1,631 | 2,154 | 32% | 1,974 | 100.0% |

주: 2013년 7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일반 협동조합 신고 건수 누계는 한 달 전에 비해 32% 늘어난 2,154건이다. 그 가운데 수리된 건수는 1,974건이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의 수리 건수가 전체의 41.8%를 차지한다.

98건의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58개만이 인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인가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5개였다. 이들이 인가를 신청할 때 밝힌 주요 사업 내용은 로컬푸드(local food), 식생활 개선, 지역개발 컨설팅 등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자수는 35명, 평균 출자금액은 3,300만 원이었다.

표 2-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 협동조합명 | 주요 사업 | 설립 동일자 수 | 출자금 (천 원) | 지역 | 업종 |
|--------------------------|---------------------------|-------------|--------------|----|------------------------|
| 수정동희망마을수직농장 사회적 협동조합 | 도시형 수직농장 운영 | 30 | 2,000 | 부산 | 농업, 어업, 임업 |
| 파주녹색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 로컬푸드 개발·연구·보급, 위탁사업 | 18 | 36,140 | 경기 | 농업, 어업, 임업 |
| 한국웰니스 사회적 협동조합 | 지역개발 컨설팅 | 13 | 6,800 | 서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아산제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 |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 91 | 120,000 | 충남 | 농업, 어업, 임업 |
| 식생활개선 과천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 식생활개선 위탁사업 | 21 | 2,580 | 경기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주: 2013년 7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2. 농촌 지역 협동조합 설립 현황¹³

7월 말까지 설립 신고된 전체 2,154개의 일반 협동조합 중에서 602개(27.9%)가 농촌 지역¹⁴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농촌 지역 협동조합은 경기도에 다소 많은 편이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큰 편차 없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업종 유형별로는 농림어업 관련 업종¹⁵이 24%, 도소매업 29%, 제조업 13%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육아협동조합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 6%,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등,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농촌 주민의 생활문화 측면 수요를 반영한 협동조합들도 설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602개 농촌 지역 일반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약 2,200만 원이고 평균 설립 동의자 수는 11명이었는데, 지역 간에 다소 차이가 난다. 평균적으로 볼 때 출자자 수도 많고 출자금 규모도 큰 지역은 전라북도, 제주도, 세종특별시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1인당 출자금액이 600만 원을 상회하였다. 이는 제주도 지역의 부동산 개발 관련 협동조합 한 곳의 출자금이 10억 원을 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그 협동조합을 제외하더라도, 제주도의 농촌 지역 협동조합 평균 출자금은 3,000만 원 수준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

13 이하의 논의에서는 일반 협동조합만을 다룬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연합회 조직은 아직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4 농촌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얼마나 설립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농촌 지역 협동조합’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 구역상 군과 도농복합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을 ‘농촌 지역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읍·면부를 농촌으로, 동부를 도시로 보고 그것에 따라 ‘농촌 지역 협동조합’을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가용한 통계 자료가 읍·면·동 수준까지 포함한 협동조합 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정의하였음을 밝혀둔다.

15 여기에서 ‘농림어업 관련 업종’이라는 표현은 농림수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및 유통까지 포함한 업종을 뜻한다.

하여 많은 편이다. 제주도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사업 내용에서는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관광 부문과 관련된 협동조합들이 상당수 있어 제주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출자금 규모도 크고 출자자 수도 많은 것 외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건수가 경기도를 제외하고 나면 도 지역 가운데 가장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라북도에서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들의 사업 내용들 가운데 농산물 생산 및 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에도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의 협동조합이나 교육 및 기타 서비스 분야 협동조합들도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규모별 분포는 <표 2-6>과 같다. 출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협동조합이 322개로 전체의 53.8%를 차지한다. 1,000만 원 ~5,000만 원 사이의 출자금을 보유한 협동조합은 212개로 그 비율은 35.0%이다. 1억 원을 넘는 출자금을 보유한 협동조합은 32개인데, 이들 협동조합들의 평균 출자금 규모는 2억 원을 넘는다.

이들의 평균 출자금 규모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자금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제주도에 하나 있는데, 그로 인해 부동산 및 임대업 분야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1인당 출자금은 900만 원으로 기록되었다. 1인당 출자금이 100만 원 이하인 협동조합들이 많은 업종은 광고업, 광업, 기술 서비스업, 출판 서비스업 등이다.

평균 설립 동의자 수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금·은 가공’과 ‘광산 개발’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광업 및 관련 분야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10명 내외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출자금이 많지 않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출자자 수가 많은 편이었다.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제조업’ 등의 협동조합들은 평균 설립 동의자 수가 10명 이내로 적은 편이었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수공업 형태의 공예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나 떡 또는 초콜릿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대체로 5~6명 정도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들이 많다

는 점이 눈에 띈다. 농림어업 분야 협동조합의 평균 설립 동의자 수는 전체 평균에 비해 약간 많고 1인당 출자금 규모는 약간 작은 편이다.

표 2-4.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업종별·지역별 분포

| 업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계 |
|----------------------------------|-----|----|----|----|----|----|----|----|----|----|-----|
| 농업, 어업 및 임업 | 26 | 8 | 17 | 22 | 25 | 32 | 10 | | 6 | | 146 |
| 광업 | | | 1 | | | | | | | | 1 |
| 제조업 | 23 | 18 | 3 | 7 | 4 | 2 | 10 | 3 | 4 | 3 | 77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 | | | | | | | 1 | | | 2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2 | | 2 | 2 | | 1 | | | | | 7 |
| 건설업 | 2 | 3 | 2 | 1 | 3 | 2 | | 1 | | | 14 |
| 도매 및 소매업 | 37 | 22 | 3 | 9 | 16 | 24 | 22 | 37 | 4 | 1 | 175 |
| 운수업 | 1 | | 2 | | | | | | | | 3 |
| 숙박 및 음식점업 | | 2 | 1 | 3 | 5 | | 3 | 2 | 1 | 2 | 19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 | 2 | 1 | 1 | 1 | 1 | | | | | 9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 | | | | | 1 | 1 | 2 | 3 | | 8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1 | 4 | | | | 2 | | | 7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3 | | 2 | | 1 | 2 | 2 | 1 | 1 | 12 |
| 교육 서비스업 | 4 | 4 | 2 | 7 | 6 | 2 | | 11 | 1 | | 37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 | 2 | 3 | 1 | 2 | 5 | 4 | 1 | | | 2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 | 3 | 1 | 6 | 9 | 3 | 3 | | 1 | | 3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 | 1 | 1 | 4 | 8 | 2 | 1 | 4 | 3 | 1 | 28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활동 | | | 1 | | | | | | | | 1 |
| N/A(알 수 없는 업종) | | | | | | | 5 | | | | 5 |
| 계 | 110 | 68 | 41 | 69 | 79 | 76 | 61 | 66 | 24 | 8 | 602 |

주: 2013년 7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표 2-5. 농촌 지역 협동조합 출자자 수 및 출자 규모의 지역별 현황

단위: 천 원, 명

| 지역 | 평균 출자금 | 평균 설립동의자 수 | 1인당 출자금 |
|---------|--------|------------|---------|
| 경기도 | 22,680 | 9 | 2,426 |
| 강원도 | 21,833 | 12 | 1,772 |
| 충청북도 | 19,325 | 10 | 2,016 |
| 충청남도 | 16,117 | 11 | 1,431 |
| 전라북도 | 30,164 | 16 | 1,882 |
| 전라남도 | 17,045 | 10 | 1,760 |
| 경상북도 | 13,963 | 11 | 1,297 |
| 경상남도 | 18,540 | 8 | 2,409 |
| 제주도 | 69,955 | 11 | 6,457 |
| 세종특별자치시 | 43,563 | 10 | 4,302 |
| 전체 | 22,773 | 11 | 2,093 |

주: 2013년 7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표 2-6.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규모 분포

단위: 개, 천 원

| 구분 | 100만 원 이하 | 100만~1,000만 원 | 1,000만~5,000만 원 | 5,000만~1억 원 | 1억 원 초과 | 합계 |
|--------|-----------|---------------|-----------------|-------------|---------|--------|
| 협동조합 수 | 50 | 272 | 212 | 33 | 32 | 599 |
| 평균 출자금 | 499 | 3,794 | 20,023 | 60,957 | 204,971 | 23,350 |

주: 2013년 7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표 2-7.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업종별 출자 규모와 설립 동의자 수

단위: 천 원, 명

| 업종 | 평균 출자금 | 평균 설립 동의자 수 | 1인당 출자금 |
|-------------------------------------|---------|-------------------|---------|
| 농업, 어업 및 임업 | 22,286 | 13 | 1,659 |
| 광업 | 11,500 | 32 | 359 |
| 제조업 | 29,137 | 9 | 3,39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8,800 | 13 | 677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23,571 | 15 | 1,571 |
| 건설업 | 10,671 | 8 | 1,311 |
| 도매 및 소매업 | 22,241 | 10 | 2,120 |
| 운수업 | 41,500 | 12 | 3,365 |
| 숙박 및 음식점업 | 25,326 | 9 | 2,766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8,894 | 23 | 814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9,229 | 14 | 9,13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071 | 5 | 2,736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1,717 | 7 | 1,758 |
| 교육 서비스업 | 10,704 | 8 | 1,28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4,860 | 12 | 1,218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8,390 | 11 | 1,667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9,546 | 8 | 2,557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활동 | 3,000 | 6 | 500 |
| 전체 | 22,773 | 11 | 2,093 |

주: 2013년 7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3.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유형

어떤 경제활동 부문에서 활동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농촌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농업 및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 ‘생활 서비스 및 기타’ 분야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분야를 농업이라고 등록한 농촌 지역 협동조합 가운데 90% 정도가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가공 및 유통도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농촌 지역의 (주로 농산물인) 특산품 생산자들이 모여서 공동 가공 및 공동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가 많다. 한편, 비교적 많은 출자금 규모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기존의 지역 농협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협동조합도 출현하고 있다. 예컨대, 전라북도 정읍시의 ‘정읍우리한우 협동조합’은 149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1억 원의 출자금을 조성했는데 한우 개량사업, 유통사업, 자재구매사업, 가공·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완주군에도 ‘완주한우 협동조합’이 결성되었다.¹⁶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중에는 농촌관광 부문의 협동조합들도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표 2-9>. 농촌관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협동조합들인데,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 수행의 법률적 주체로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들이 많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대체로 농촌체험 서비스와 농산물 직판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다. 설립 동의자 수, 출자금 규모 등의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16 축산 외에도 경종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 이것들은 대체로 농산물 생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한다. 잠정적으로 축산과 경종 분야의 협동조합들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라고 부른다면, 이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기능이 동일하며 조직 구조가 흡사하다.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과도 기능이 유사하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이라고 범주화되어 정책 지원 대상의 자격을 갖는데 비해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후술하겠지만,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 사이에 법제상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 밖에도 교육, 여행, 웨딩, 컨설팅 등의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표 2-10>. 농촌 주민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들의 협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들도 설립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공동육아와 같은 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내용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 가령, ‘아라창의학교 협동조합’은 학원 강사 파견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춘천별빛산골유학 협동조합’은 농촌유학을 실행하고 있다. 출판 분야에서 지역 언론매체들의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도 눈에 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완주한우 협동조합’ 설립 과정

완주군도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활동적인 농민들의 수가 많지 않다. 그런데 다른 품목에 비해 한우의 경우 젊은 농민들이 많은 편이다. 젊은 생각을 지닌 전북 완주군 한우협회 회원들이 한우 고기의 유통단계를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하였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출자금 하한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조합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출자금 규모는 6억 원에 달한다. 8월 말에 개장할 판매장을 염두에 두고 출하계획서를 모집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옵션(option)을 부여하려 한다. 첫째, 출자좌 1좌당 한우 1마리 판매를 보장한다. 둘째, 등급 장려금을 지원한다. 1등급은 10만 원, 1+등급은 30만 원, 1++등급은 4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사업 실행 후 남는 이익금의 5% 정도는 조합원에게 배당하려고 한다. 비료나 약품을 지원하려고 한다. 2014년에 ‘유통사업단’을 구성하고, 완주의 로컬푸드 매장에 진출하며, 한우 3,000두를 판매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정했다.

한우의 유통은 일반적으로 7~9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완주한우 협동조합’에서는 그 유통단계를 크게 줄이려 한다. 그때 발생하는 도축수수료는 완주한우 협동조합이 부담하려 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완주한우 협동조합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은 한우 1마리당 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우협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개점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농가의 믿음과 운영자의 신뢰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가 맺어지는 협동조합이 성공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품질관리 기준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출하계획서를 매개로 관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사육 상태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며, 저등급 판정 한우를 위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농가들의 사육기술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한우 1등급 출현율은 평균 47% 정도인데, 화산면의 경우 60%에 달한다.

- 완주한우 협동조합 ○○○이사와의 면담 내용

표 2-8. 농업 생산 관련 협동조합

단위: 명, 천 원

| 협동조합명 | 주요 사업 내용 | 조합원 수 | 출자금 | 지역 |
|----------------|-----------------------------------|-------|---------|------|
| 완주한우협동조합 | 정육, 판매유통 | 60 | 500,000 | 완주군 |
|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친환경 쌀(밀, 보리 등) 판매사업, 유기질비료 등 공동구매 | 232 | 145,520 | 익산시 |
| 정읍화식(쇠죽)한우협동조합 | 농축산 유통 및 가공·판매, 조사료 생산가공 | 6 | 120,000 | 정읍시 |
| 용수리마을협동조합 | 농수산물 제조판매 | 10 | 100,000 | 제주도 |
| 남한강꾸지뽕협동조합 | 꾸지뽕생산단지조성 | 5 | 100,000 | 충청북도 |
| 단고을협동조합 | 친환경농산물생산판매 | 10 | 100,000 | 충청북도 |
| 정읍우리한우협동조합 | 한우개량, 유통사업 및 구매, 가공, 제조 판매 | 149 | 100,000 | 정읍시 |
| 오곡협동조합 | 임산물 제조가공 사업(통밥사업, 목재사업) | 6 | 100,000 | 전라남도 |
| 새만금 버섯협동조합 | 버섯 공동유통판매사업 | 57 | 93,500 | 군산시 |
| 섬진강협동조합 | 사료제조 판매 | 5 | 70,000 | 전라남도 |
| 군산시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학교급식 및 생산농가 농자재 공동구입 | 10 | 63,500 | 군산시 |
| 갈두친협동조합 | 영농 및 교육 사업 | 151 | 59,525 | 태안군 |
| 원주 영농협동조합 | 버섯 생산 및 판매사업 | 5 | 50,000 | 강원도 |
| 영동꽃감협동조합 | 꽃감 제조 및 판매 | 5 | 50,000 | 충청북도 |

주 1) 2013년 7월 31일 기준.

2) 몇몇 협동조합은 소재지를 시·군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표 2-9. 농촌관광 관련 협동조합

단위: 명, 천 원

| 협동조합명 | 주요 사업 내용 | 조합원 수 | 출자금 | 지역 |
|----------------|--|-------|---------|------|
| 도니올명품쌀농촌체험협동조합 | 농촌체험사업 농산물판매 | 5 | 500 | 이천시 |
| 양평농촌나드리협동조합 | 농촌체험 | 11 | 20,000 | 양평군 |
| 송송골느림보협동조합 | 딸기, 된장체험 | 5 | 300,000 | 남양주시 |
| 인생협동조합 | 도시텃밭사업 | 11 | 38,000 | 남양주시 |
|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 농산물 공동경작, 판매, 체험관광 등 | 19 | 1,900 | 강원도 |
| 단풍미인협동조합 | 조경수 진시장 조성, 비늘하우스 설치(단풍분재 진시장용) | 14 | 20,580 | 정읍시 |
|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 | 농산물직거래판매 농산물체험 | 18 | 20,300 | 전남 |
| 농산어촌섬마을유학협동조합 | 폐교활용교육 | 12 | 1,200 | 전남 |
| 해남김치마을협동조합 | 농촌체험관광, 농특산물, 가공제품판매 | 11 | 10,000 | 전남 |
| 들국화마을협동조합 | 녹색농촌휴양마을체험사업, 약초재배 등 | 5 | 2,500 | 전남 |
| 뱃등마을꾸러미 협동조합 | 마을생산농산물 선별 및 유통사업, 갯콩나물 재배, 절임배추, 두부 된장 외, 힐링체험마을 구축 | 11 | 5,000 | 전남 |
| 항꾸네협동조합 | 적정기술공방 교육사업, 농촌체험 및 교육사업, 농산물 직거래사업 | 15 | 7,200 | 전남 |
| 고흥 차향힐링 협동조합 | 휴게음식점(다류및음식), 농산물 직거래 및 위탁판매, 힐링체험사업 | 12 | 5,000 | 전남 |
| 슬로시티푸른섬협동조합 |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 농산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등 | 6 | 7,000 | 전남 |
| 삼채협동조합 | 삼채의 공동생산, 판매, 공동자재구매, 농촌체험장 운영, 브랜드개발 등 | 7 | 20,550 | 전남 |

주 1) 2013년 7월 31일 기준.

2) 몇몇 협동조합은 소재지를 시·군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표 2-10. 농업 및 농촌관광 부문 외의 협동조합

단위: 명, 천 원

| 협동조합명 | 주요 사업 내용 | 조합원 수 | 출자금 | 지역 |
|----------------|------------------------------------|-------|--------|-----|
| 협동조합자연필로소교육연구소 | 자연주의교육 | 6 | 10,000 | 용인시 |
| 아라창의학교 | 학원강사 파견 | 10 | 1,100 | 김포시 |
| 초록누리협동조합 |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생태 환경체험, 청소년 환경교육 등 | 9 | 900 | 장수군 |
| 완주교육지원협동조합 | 지역사회 교육운영 지원사업 | 5 | 2,500 | 완주군 |
| 수협동조합 |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활동 (미술치료 등) | 5 | 2,500 | 완주군 |
| 춘천별빛산골유학협동조합 | 농촌유학 홍보 등 | 6 | 600 | 춘천시 |
| 브레인무주협동조합 | 친환경 두뇌음식학교운영, 두 외음식꾸러미 배송, 레스토랑 운영 | 23 | 2,300 | 무주군 |
| 춘천지역요양보호사협동조합 | 요양보호사 평생교육 사업 및 부대사업 | 25 | 1,500 | 춘천시 |
| 명성협동조합 | 사회복지시설운영 | 6 | 5,000 | 강원도 |
| 협동조합 착한결혼 | 결혼중개업 | 7 | 1,750 | 제주도 |
| 협동조합 제주힐링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컨설팅사업 | 6 | 2,300 | 제주도 |
| 파주택시협동조합 | 택시종사자 | 5 | 1,000 | 파주시 |
|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 사진이미지 판매 및 대여사업 등 | 10 | 8,600 | 강원도 |
| 괴산언론협동조합 | 인터넷신문 | 10 | 5,700 | 괴산군 |

주 1) 2013년 7월 31일 기준.

2) 몇몇 협동조합은 소재지를 시·군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4. 시사점

4.1. 도시와의 비교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평균 출자금은 2,277만 원이었다. 도시와 농촌을 합한 전체 협동조합들의 평균 출자금 규모 1,947만 원보다 약간 많은 편이었다. 일반시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설립된 협동조합들의 평균 출자금 규모는 1,818만 원이었다. 평균 설립동의자 수는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경우 약 11명이었고, 도시 지역 협동조합들의 경우 약 13명이었다.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 동의자 수가 적어도 출자금 규모는 오히려 약간 더 크다.

4.2. 농촌 인구와 조합원 수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실 있는 협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협동조합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특정 지역 전체에 걸쳐 주된 사업체 형태로 협동조합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력 관계도 발전하여, 그 지역사회가 협동조합 활동을 매개로 발전하는 해외 사례가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주 소개되었다.¹⁷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다수의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지역 인구보다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매우 적다. 전국 농촌 인구 대비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조합원 수의 비율은 0.04%이다. 전

¹⁷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트렌티노, 스페인의 몬드라곤 지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라북도의 경우 그것을 상회하는 0.07%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역 간의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분별하기는 어렵다.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의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표 2-11. 농촌 인구와 조합원 수 추정

단위: 명

| 지역 | 평균 출자금 | 평균 설립 동의자 수 | 인구 대비 조합원 수 |
|---------------------|------------|----------------|----------------|
| 도농복합시 및 군 전체 | 17,577,102 | 6453 | 0.04% |
| 세종특별자치시 | 113,117 | 81 | 0.07% |
| 경기도 내 도농복합시 및 군 | 4,176,976 | 991 | 0.02% |
| 강원도 내 도농복합시 및 군 | 1,311,661 | 838 | 0.06% |
| 충청북도 내 도농복합시 및 군 | 898,776 | 393 | 0.04% |
| 충청남도 내 도농복합시 및 군 | 2,028,777 | 777 | 0.04% |
| 전라북도 내 도농복합시 및 군 | 1,873,341 | 1266 | 0.07% |
| 전라남도 내 도농복합시 및 군 | 1,664,545 | 736 | 0.04% |
| 경상북도 내 도농복합시 및 군 | 2,698,353 | 603 | 0.02% |
| 경상남도 내 도농복합시 및 군 | 2,227,843 | 508 | 0.02% |
|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농복합시 및 군 | 583,713 | 260 | 0.04% |

주: 2013년 7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4.3.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업태

도소매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 제조업 부문 등의 협동조합들도 있지만, 역시 농촌 지역에서는 농림어업 부문의 협동조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 보아서는 농업 생산 외에도 부가적으로 음식점업, 숙박업, 수공업, 식품가공업 등의 활동을 겸하지만 협동조합 설립 신고 과정에 단일하게 ‘농업’이라고 기록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협업적 농업 경영을 위한 법인으로서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형식이 있음에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법률들이 농업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농지 소유 자격,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등을 제공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그렇게 업태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데도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농촌 지역에서 적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김기태 등(2013)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분야 및 농촌 지역 협동조합 관계자 14명을 면접 조사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협동조합 설립 이유를 ‘원래 비영리사단법인을 배경으로 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협동조합기본법」이 도입됨에 따라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한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모든 조합원이 농업인이어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농업인 외의 소비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기에 다중이해당사자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 원리에 부합하고자 설립한 경우’, ‘정부 등의 「협동조합기본법」 홍보 및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경우’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의사결정원칙 등 거의 대부분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의 법인 형식으로서의 ‘민법상의 조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이 무한책임 회사이며 공동자산에 관한 소유권 형태가 합유(合有)임을 뜻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유한책임 회사이며 공동자산의 소유권 형태가 공유(共有)에 가깝다는 것과 다르다. 영농조합법인이 무한책임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 이행에 대해 조합원들이 무한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자(조합원) 모집이나 법인의 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다.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이다.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설립 이유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 협동조합 설립 이유
 -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 사업을 수행하다가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
 - 농업인 외에 소비자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회원을 구성하려는 경우
 -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원리와 가치에 부합하고자 설립한 경우
 - 정부 및 산하기관의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에 따른 설립 신청 및 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도 일부 작용

-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
 - 협동조합이 수익상 이점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었음
 - 협동조합으로 공동의 사업을 하면서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경제적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음
 - 협동조합으로 법인화를 하면서 이용하는 소비자나 관계자의 입장에서 신뢰감을 주거나 호응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

-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시설 및 대출과 같은 금융적 지원
 - 교육과 홍보와 같은 간접적 지원
 - 기존의 농업법인과 동등한 법적 제도 혜택이 기본법상 협동조합에도 주어졌으면 한다고 응답
 -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높았음
 - 동등한 과세조건에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응답. 즉, 협동조합의 자립적 운영에 대한 협동조합마다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

-자료: 김기태 등(2013)에서 요약.

제 3 장

제도 개선 과제

1. 법제 정비 논의의 범위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법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세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여러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 활동하게 될 협동조합들에게 동종(同種) 분야에서 다른 종류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¹⁸ 둘째, 농촌 지역에서 새로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이들이 겪을 수 있는 행정적·절차적 고충을 줄여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측면의 제도 개선은 주로 「협동조합기본법」과 그 시행령 수준에서 개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셋째,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18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 7월 4일에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될 ‘협동조합이 민법, 상법 등 다른 일반법에 의한 법인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개정해야 할 농림수산물부 소관 법률이 4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론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2).

한다. 그런데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정책과 관련된 법제 정비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다. 협동조합이 ‘자율과 독립’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조직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이 이제 막 출현하기 시작한 국면이어서 관련 지원 정책을 선불리 논의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의 법제 정비 방향만을 논한다. 특히, 농업·농촌 정책의 대상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농업법인과 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둔다.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면서 정책 대상까지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¹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다.²⁰ 따라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농촌 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된 정책 대상들이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정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과 비견하여 형평성을 논할 수 있는 형식의 정책 대상은 일차적으로 농업법인이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라 정책 대상인 농업경영체 가운데 법인격을 지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농업·농

19 기본법이란, 특정 행정영역에서의 국가행정상 기본적 이념·정책·방침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대해서 일정한 지도성 및 방향성을 가지지만, 반드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위개념을 가지지 않는 법률로서, 법제실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강현철 등, 2012: 62).

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농촌 정책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다.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3호)

촌 정책 시행에 있어 법인이라는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조응하는 정책 법²¹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여타의 개별 법령들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농업법인 규정을 그대로 따라 정책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만 「협동조합기본법」을 따른 협동조합 법인들을 적절히 규정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대체로 그렇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타 법률들이 많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 출현한(또는 출현할) 협동조합들과 관련하여 법제 정비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지만, 그렇게 생겨나는 협동조합들이 수행하는 활동이 농업·농촌 정책의 대상으로 규정된 농업법인들과 동일할 때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많은 법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타의 농업·농촌 정책 관련 법률 등의 순서로 살펴본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정책 대상과 협동조합

농업·농촌 정책의 대상이면서 권리 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조항들만을 열거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21 정책법이란 기준설정(정책결정에 근거하여 기준이나 규제수단을 설정 내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줌), 정부기관이 중요한 정책을 시행할 때 최소한도의 절차적 행위기준 준수 요구(시책 등)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강현철 등, 2012: 64).

표 3-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책 대상을 규정한 조항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8조(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제40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및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농어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떤 협동조합 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하거나 기업적 농업경영을 할 경우, 정부는 해당 협동조합에 대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만을 협업적 및 기업적 농업경영의 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도(동법 제39조),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부과되는 의무인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의 대상으로도(동법 제40조), 농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도(동법 제42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공동 브랜드화 정책의 대상으로도(동법 제43조) 협동조합 법인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 대상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에서 다룬 것처럼 법인격을 가진 농업경영체로서 협동조합을 기존의 농업법인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업인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이나 그런 협동조합들의 연합회가 ‘농업 관련 단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동법 제46조 제2항). 전자의 경우, 농업법인을 정의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떤 조건을 전제로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농업법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물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여러 관련 법에서 협동조합을 자동적으로 농업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법률에서는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개별 법률들에서 ‘농업 관련 단체’를 제 각기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을 그 ‘농업 관련 단체’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면 개별 법률 수준에서의 정의 조항을 살펴 필요한 경우 개정해야 한다.

3. 농업법인과 협동조합

3.1. 법률 현황

농업경영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대상으로 규정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나뉘는데(동법 제2조 제3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된다(동법 제2조 제2호).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것에 종사하는 협동조합²²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법인-농업경영체에 대해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제12조), 다양한 종류의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20조 제1항).²³ 그리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22 이하에서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라고 약칭한다.

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법인을 특정 농업정책의 대상(또는 참여자)으로 한정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는 관계 법률이 많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한다면, 여러 법규와 정책사업 시행 지침에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뜻한다.²⁴ 물론, 법조문에서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의 용어를 인용하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병행하여 함께 개정해야 하는 법률들도 많다.²⁵

이상의 논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어나는 형평성 문제의 가능성을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 조합원들이 모두 농업인이지는 않은 경우이다. 그리고 농업법인이라고 해도 영농조합법인 구성의 필요조건인 조합원의 자격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의 필요조건인 사원(社員) 자격 조건 규정이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4 국회정보시스템(www.assembly.go.kr)의 법률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농어업법인’ 등의 검색어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이 19건이며 조문(條文)은 50건이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포함).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조문을 개정하면, 이 법률들에서는 자동적으로 해당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농업법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목록을 <부록 1>에 정리하였다. 이것은 법률 수준에서 파악한 것이다. 그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검토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문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개정하더라도, 개별 법 조문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 목록을 <부록 2>에 정리하였다. 이것은 법률 수준에서 파악한 것이다. 그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검토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준조합원이 될 수는 있다.²⁶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액 계가 총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고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액 합계 한도는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²⁷

표 3-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책 대상을 규정한 조항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

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조.

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참조.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체로 구성원(조합원)이 농업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인데, 이 측면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의 구성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하다. 그러므로 개별 법률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면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적어도 농업회사법인의 구성 요건을 지키는 경우에 한하여 농업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농업법인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와 동등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영농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부가 조건을 정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⁸ 다음 절부터는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법률적 형평성 문제를 살펴본다.

3.2. 농지 소유 및 이용에 있어 기존 농업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기 이전에 수행된 2012년의 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어촌공동체회사이거나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들 가운데 48.9%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그 법인격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정섭 등, 2012: 35). 물론, 그 가운데에는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과 결부되어 보조금 등의 지원 시책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섞인 전환 의향도 있겠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직후의 상황에서 보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 협동적 농업경영 조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내지는 반성으로부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을 갖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²⁹

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2조를 참조.

29 김기태 등(2013: 58-59)의 연구에 그러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수행하고 그 자료를 일부 인용하고 있는데, 질문 항목 가운데에는 사업 조직의 법인 형식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한 여러 종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있어 눈길을 끈다. 면담 자료 몇 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하고, 협동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앞으로의 정부정책도 교육과 컨설팅 위주로 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사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농업법인에 비해 협동조합

그런데 현재의 법률체제에서는 농업인들이 협업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협동조합의 활동은 농업법인으로 인정되는 영농조합법인의 활동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음에도 그렇다.

「농지법」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를 빼고 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기’(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때문이다. 이때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농지법」에서 농업법인은, 앞 절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간주될 수 없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서 농지 소유에 관한 여러 종류의 법제나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의 일괄적 상속·증여 또는 양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농지법」 제22조 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도록 청구’(「농지법」 제33조의 제2항)할 수도 없다. 아울러 「농지법」 제15조에서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³⁰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세제혜택이 없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1인1표라든가 지분에 상관없이 사람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영농조합법인도 1인1표이기는 하지만 지분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30 「농지법」 제15조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실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농지법」 외에도 농지 소유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농업법인에게 제공되는 자격이 있는데,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는 농지매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농업법인은 이 사업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되고 있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3항은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의 일환으로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임대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법 제24조의3에서도 경영희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척지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법인을 구성하여 간척지를 임차하려고 할 때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하여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다.³¹ 기존의 농업법인과 최소한의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는 것 자체가 시급한 문제다.

3.3. 조세감면 제도에서 기존 농업법인과 의 형평성 문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된 조세감면제도는 약 30개 이상’이다(김미복·김수석, 2011: 14). 그 가운데 농업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이나 관련자가 납부해야 할 조세 가운데 감면 대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31 그 밖에도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농업법인을 배려하는 법규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률들이 있다. 가령,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게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제5조 제3항),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5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민주화운동,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농토구입자금을 대부한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66조).³² 그리고 제69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직접 경작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유사하게 세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³³ 농협 등이 농업법인에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동법 제10조), 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법인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동법 제11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농업법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 및 임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동법 제13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일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동법 제12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동법 제128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업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동법 제129조) 등

32 동법 제68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의 경우와 유사하게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농지 및 토지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가운데 배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관련 조문(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을 <부록 3>에 실는다.

33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관련 조문(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을 <부록 4>에 실는다.

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도 농업법인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조세 측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3.4. 지원 정책 및 규제 관련 기존 농업법인과 의 형평성 문제

농지 소유나 조세감면 외에도 적절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이나 규제 특례 조치에 있어서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대강은 여러 법률에서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2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58조, 제59조 등에 지원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

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어업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 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농수산물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에 열거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 지원 정책 관련 조항은 여타의 농업 관련 법률, 시행령,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주요한 법적 근거로 인용되는 것들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지원 정

책의 근거를 다각도로 마련해 둔 것이다.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28조),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이나 농어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여러 지원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29조). 한편, 농업법인 자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농수산물과 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 유통개선, 농업 부문의 해외 투자, 농수산물 식품 수출 진흥에 필요한 정책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 일환으로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 두고 있다(동법 제42조, 제43조, 제58조).

이러한 포괄적 조문을 인용하여 여러 법률들이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한 것 몇 가지만을 살펴본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농업인 등’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다.

한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다(동법 제3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동법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동법 제8조), 여러 종류의 인가 및 허가 관련 의제를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제11조), 공공기관이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외소득 활동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5조). 이러한 법률 조항을 그대로 따르자면, 가상적으로는, 어느 농촌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생산 활동 외에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할 때 앞에 열거한 조문들에 의하여 공공 부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농업인들이 농업생산 활동을 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동일하게 농외소득 활동을 전개하더라

도 그 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밖에도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지원 또는 규제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서 현 상태로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해당되는 조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법률들이 여럿 있다.³⁴ 법률보다 하위의 시행령 수준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규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보다 더 하위 수준의 정책사업 지침인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보조 또는 융자 정책사업의 대상이 농업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김기태 등(2013: 152-155)은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수록된 정책 사업들 가운데 협동조합을 사업대상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정책 사업 49개를 적시한 바 있다. 그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조치만으로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3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농업협동조합법」, 「소금산업 진흥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이다.

제 4 장

요약 및 결론

2013년 7월 말까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신고하고 그것이 수리된 일반 협동조합의 수는 2,154개였다. 그 가운데 27.9%에 해당하는 602개의 일반 협동조합이 군 또는 도농복합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총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농촌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도시에서처럼 활발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600여 개 일반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 규모가 도시 지역의 그것을 상회한다는 점도, 그 같은 현상의 일단을 보여준다.

농촌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경영을 협업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법인 형식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존재한다. 협업적 경영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인을 포함한 여러 사인(私人)들이 모여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법인 형식으로서 농업회사법인도 있다. 법률은 이 둘을 묶어서 농업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이 설립되면서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럿인데, 협업적 농업경영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즉 무한책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음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이 정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농산물 소비자들까지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협동조합을 하는 것이, 즉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 분야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형식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조직 운영 원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농촌의 여러 행위자들을 협동조합 설립으로 이끌기도 하였다. 물론, 사실과는 다르게,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이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 지원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 왜곡된 기대심리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들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아직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러 관련 법률에서 농업법인은 크게 세 종류의 유리함을 갖는다. 첫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여러 종류의 조세감면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농업 및 농촌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세 측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우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다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 하나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연계된 수십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이어서 시행령과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을 광범위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을 포함하는 법률 조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

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는 3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

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24조의3(경영희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희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
-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농어업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제40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및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 어법·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

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어업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 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제35조(공동 방제)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부록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는 법률 조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 또는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第5條(農林漁業機械化 및 施設現代化의 촉진)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農林漁業의 機械化 및 施設現代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農林漁業機械와 農林漁業用施設에 필요한 機資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械·裝備(이하 “農業機械등”이라 한다)의 生産·普及, 공동이용의 촉진, 이용·整備등에 관한 敎育訓練, 部品 및 資材의 원활한 供給등 事後奉仕 및 試驗·研究·調査등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1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수산·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

인을 말한다.

제26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농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⑦ 제5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5조의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부록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

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

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록 4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 ②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

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

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3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

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에 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에 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문헌

- 강현철·박광동·차현숙·김중천·류창호.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1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관계 정부부처 합동회의 자료.
- 기획재정부. 2013a.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협동조합 활성화에 박차.” 보도자료, 2013년 1월 24일자.
- 기획재정부. 2013b. “물가 관계 부처 회의 개최 결과.” 보도자료, 2013년 3월 15일자.
- 김기태·김연민·김원경·박주희·신동욱. 2013.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두년.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30(2): 1-21.
- 김미복·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마상진·김미복.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형미. 2011.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생협평론」 4: 32-42.
- 박승욱. 2012. “왜 협동조합 ‘운동’인가.” 「녹색평론」 125: 33-46.
- 설광언·김동석. 2012.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동조합기본법의 영향.” 2012 협동조합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심태섭, 김완석. 2012.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 안전행정부. 2013. 「마을기업 육성 지침」. 안전행정부.
- 오은주·김선기. 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KRILA Focus」 제5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원종욱·김태완·김문길·윤문구·엄형식·윤시몬·임완섭·정은영. 2012.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선·권소일·남상호·김미숙·오영호·윤강재·김현식·이상림. 2012.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원봉. 2008.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녹색평론」 100: 202-211.
- 장종익.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한국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동향과 전망」 86: 289-320.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eratives.go.kr>.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정책연구보고 P186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8.

발 행 2013. 8.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591-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